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24

발의연월일: 2020. 12. 4.

발 의 자: 한병도 · 김영배 · 정일영

김승원 • 이수진 • 이형석

이용빈 · 김민철 · 전용기

최기상 · 김민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 법에서 「형사소송법」의 관련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5조).

법률 제 호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8호 중"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"를"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	제5조(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
건에 해당하는 재해) 위험직무	건에 해당하는 재해)
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	
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<u>「형사소송법」 제196</u> 조에	8. <u>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</u>
따른 사법경찰관리나 「사법	
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	
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	
률」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	
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	
범죄의 수사·단속 또는 범	
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	
입은 재해	
9. ~ 11. (생 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